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가단1602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중
담당변호사 조규현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2. 6. 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6. 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2022. 6. 7.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②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채무의 본래 목적에 따른 변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2022. 6. 7.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소외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소외 회사가 C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909,070,565원의 채무를 넘어서는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채권자 중 하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㉕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직후인 2022. 6. 20. 영업목적이 소외 회사와 거의 동일한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된 반면에 소외 회사는 그 직후인 2022. 6. 24. 영업목적은 거의 모두 삭제하였는바 이는 피고와 소외 회사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징표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석동

목 록

※ 채권양도계약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에 2022. 6. 7. 아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4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

- 아 래 -

임차인 주식회사 []과 임대인 [] 사이
에 2020. 4. 7. 「서울 성동구 [] 대지 및 건물」에 관하
여 체결한, 임대차기간 2020. 4. 21.부터 2025. 4. 20.까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월차임 17,000,000원의 임대차계약

문.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채권

가. 신용보증위탁으로 인한 신용보증서 발급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 (이하 '소의 회사'라고 합니다)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가 소외 C 주식회사에게 부담하게 될 상거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갑제1호증).

보증번호 : E

보증금액 : 1,000,000,000원

보증기한 : 2021. 5. 27. (2023. 5. 26.로 연장, 갑제1호증의 3)

피보증채무 : 소외 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약정한 2020. 5. 28. 자 석유제품공급계약서¹⁾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상거래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보증상대처 : C 주식회사

나. 구상관계의 약정

원고는 소외 회사를 위하여 위 신용보증을 하면서, 소외 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재 담보되는 가.항 기재 상거래채무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

¹⁾ 이하 '이 사건 상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실하여 원고가 소의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소의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채채무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갑제1호증의 2), 지연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입니다(갑제5호증).

다. 주채무의 실행

소의 회사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거래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위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라.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변제금

소의 회사는 2022. 6. 8. 기한이 도래한 이 사건 상거래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갑제2호증), C 주식회사가 2022. 8. 30.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22. 11. 9. C 주식회사에게 909,070,565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갑제3호증). 원고는 같은날 위 대위변제금 중 9,468,48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899,602,085원입니다.

(2) 확정손해금

원고는 대위변제금 중 일부금을 회수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손해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대상금액(원)	기간	일수	요율	금액(원)
9,468,480	2022.11.9~2022.11.9.	1	8	2,075

마. 소 결

그렇다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99,604,160원(대위변제금 잔액 899,602,085원 + 확정손해금 2,075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899,602,08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 일인 2022. 11.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고 채권의 피보전채권 해당성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8. 28. 선고 2014나20229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다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인하여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C 주식회사와의 상거래채무가 존재하였고,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22. 11. 9. C 주식회사에게 909,070,565원을 변제하였습니다(감제3호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899,602,085원입니다).

그렇다면, 위 대위변제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C 주식회사의 상거래채권(대위변제금 잔액 899,602,085원)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²⁾ 소정의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변제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위 대위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22. 6. 7.(아래에서 상술합니다)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1)항에서 살펴본 법정대위권에 기한 채권 외에 1.항과 같은 고유의 구상채권도 갖고 있으며, 위 구상채권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성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2)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상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원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원고는 소의 회사에 대하여 1.항과 같은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은 2020. 5. 28. 이미 성립해 있었고, 소의 회사는 2022. 6. 9.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그 무렵 [C] 주식회사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채권은 본 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의 회사의 사해행위

(1) 소의 회사는 2020. 4. 7. 「서울 성동구 [F] 3)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G] 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20. 4. 21.부터 2025. 4. 20.까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월차임 17,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6호증, 갑제7호증).

그런데, 소의 회사는 부실 직전인 2022. 6. 7.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40,000,000원에 대하여 [A] 과 사이에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갑제8호증), 임대인은 소의 회사의 위 보증금 140,000,000원 중 차임 연체분 등 39,600,000원을 공제한 100,000,000원을 2022. 6. 17. 채권양수인 [A] 에게 지급하였습니다. [A]

3) 소의 회사가 주유소영업을 위해 임차한 사업장(주유소)입니다.

□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주유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갑제9호증).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소의 회사의 위 임대차보증금 처분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잘 아는 사이의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 소의 회사의 위 사해행위에 기해 피고가 얻은 수익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데, 수익자인 피고가 이미 양수한 금전채권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금전의 특징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피고가 얻은 수익금 1억원의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4. 결 어

따라서, 소의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22. 6. 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